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(5급 1명, 6급 1명) 중 1명(5급 1명)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00.00. 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데이터전담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의 명칭을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 중 “기획재정담당관·혁신행정담당관·법무담당관·국제교류담당관”을 “기획재정담당관·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·법무담당관·국제교류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혁신행정담당관”을 “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7항제2호, 같은 조 제8항제2호, 같은 조 제9항제2호, 같은 조 제10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“제4항제2호”를 각각 “제6항제2호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478”을 “47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70”을 “471”로 하며, 검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통계사무관·부감사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시설사무관·임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154”를 “155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482”을 “483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74”를 “475”으로 하며, 검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통계사무관·부감사

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식품위생
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환경
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154”를 “155”으로 한다.
별표 6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(생략)	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<u>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· 법무담당관 · 국제교류담당관</u> 및 민간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,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· 법무담당관 · 국제교류담당관</u> 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혁신행정담당관</u>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④ <u>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</u> -----
1. ~ 33. (생략)	1. ~ 33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8조(행정심판국) ① ~ ⑥ (생략)	제8조(행정심판국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재정경제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⑦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<u>제4항 제2호</u>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	2. ----- <u>제6항 제2호</u> -----
⑧ 국토해양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⑧ -----

1. (생 략)

2.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
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
에 해당하는 사항

⑨ 사회복지심판과장은 다음 사
항을 분장한다.

1. (생 략)

2.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
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
에 해당하는 사항

⑩ 환경문화심판과장은 다음 사
항을 분장한다.

1. (생 략)

2.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
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
에 해당하는 사항

⑪ 운전심판팀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(생 략)

2.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
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
에 해당하는 사항

제15조(한시정원) 청탁금지법령의
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
수행하기 위해 「행정기관의 조
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제6항제
2호-----

⑨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제6항제
2호-----

⑩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제6항제
2호-----

⑪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제6항제
2호-----

<삭 제>

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
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
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 감
총계	.		.		.	
			<u>478</u>		<u>479</u>	+1
일반직 계	.		.		.	
	.		.		.	
	.		<u>470</u>		<u>471</u>	+1
	.		.		.	
	.		.		.	
검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사회 복지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부감 사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 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		<u>154</u>		<u>155</u>	+1
	.		.		.	
	.		.		.	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482</u>	• <u>483</u>	+1
일반직 계	• • <u>474</u>	• • <u>475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검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사회 복지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부감 사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 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<u>154</u>	<u>155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